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생략</p> <p>② 주 전공 학점 이외에 전공특화교과목을 최소 10학점 이상 취득하는 것을 나노디그리라 한다.<개정 2019.2.26., 2024.5.8.></p> <p>③ 신설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현행</p> <p>② 주 전공 학점 이외에 <u>특화된 세부 과정별 교과목 이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직무역량을 인증하는 소단위 교육과정을 나노디그리라 한다.<개정 2026.4.24.></u></p> <p>③ <u>책임교수는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세부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교과목 개설, 학생지도를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신설 2026.4.24.></u></p>	<p>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의 정의를 새롭게 반영하여 문구 변경</p> <p>책임교수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
<p>제8조(이수학점) ① 생략</p> <p>② 나노디그리 이수는 전공학부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최소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26., 2024.5.8.></p> <p>③ ~ ④ 생략</p>	<p>제8조(이수학점) ① 현행</p> <p>② 나노디그리 이수는 <u>세부 과정별로 지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4.24.></u></p> <p>③ ~ ④ 현행</p>	<p>25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8학점, 이전 입학생은 10학점으로 이수학점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수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</p>

2-2-3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에 관한 규정

<규정명 개정 2024.5.8.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5.8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주 전공 학점 이외에 다른 분야의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취득하여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부전공이라 한다.<개정 2019.2.26 >

② 주 전공 학점 이외에 특화된 세부 과정별 교과목 이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직무역량을 인증하는 소단위 교육과정을 나노디그리라 한다.<개정 2019.2.26., 2024.5.8., 2026.4.24.>

③ 책임교수는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세부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교과목 개설, 학생지도를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6.4.24.>

제3조(이수의무) ①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부전공 또는 나노디그리 중 반드시 1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외한다.<개정 2021.12.7., 2024.5.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이나 휴학기간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강이 어려운 복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신설 2021.12.7.> <개정 2024.5.8.>

제4조(부전공 이수범위) 부전공 이수범위는 학칙 제37조 제2항에 제한된 간호학부 이외의 학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이수자 허용인원) ①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자의 허용인원은 시설의 수용능력, 부전공 학부 및 나노디그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수신청 전에 허용인원을 정한다. <개정 2024.5.8.>

② 제1항의 허용인원에 따라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의 이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8.>

제6조(수강지도) 부전공 또는 나노디그리를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부장과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책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4.5.8.>

제7조(이수신청) ① 부전공은 1학년, 나노디그리는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소정기간 내에 신청한다.<개정 2019.2.26., 2024.5.8.>

② 학부장은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수 대상자를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<개정 2017.2.16., 2019.2.26., 2024.5.8.>

제8조(이수학점) ① 부전공 이수는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나노디그리 이수는 전공학부에서 세부 과정별로 지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26., 2024.5.8., 2026.4.24.>

③ 삭제 <2019.2.26.>

④ 부전공 승인 이전에 부전공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 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
제9조(이수변경) ① 이수중인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1개 과정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<2024.5.8.>

② 전항에 따라 포기한 부전공과정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26.>

제10조(이수사정 및 이수인정) ①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의 이수사정은 학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<개정 2019.2.26., 2024.5.8.>

② 부전공 또는 나노디그리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학적부 및 학위증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)에 표기한다.<개정 2024.5.8.>

제11조(기타) 부전공 및 나노디그리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개정 2024.5.8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개정 이전(2016학년도~2024학년도) 입학한 편입생은 부전공 또는 심화전공·나노디그리를 의무이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